

전공·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11.24.
페이지 수	1/8

2012.03.01.제정 2014.02.01.개정 2019.07.16.개정 2020.07.03.개정 2020.09.25.개정 2022.04.15.개정 2022.11.24.개정

소관부서 : 산학처

제1조(목적)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은 통해 순수한 창의력과 전공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실용적이고 체험적인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전공분야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21세기 무한 기술경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종류 및 역할) 동아리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동아리 : 전공분야의 전문 지식과 학습 능력 향상

2. 창업동아리 : 창업관련 활동으로 졸업 후의 창업진로 개발

제3조(자격)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등록요건) 동아리에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칙에 맞게 건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 2. 동아리는 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동아리 등록 시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선임하여야 한다.
- 4. 타 동아리와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제5조(등록절차 및 승인) 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학처에 제출하여 산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25., 2022.11.24.>

- **제6조(등록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추고 산학처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2022.11.24.>
 - 1. 동아리 등록원 1부(별지 제1호 서식)
 - 2. 동아리 지도교수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3. 동아리 활동사업 및 예산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4. 동아리 회원명부 1부(별지 제4호 서식)
 - 5. 직전학기 동아리 활동보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신규등록 시는 제외
- 제7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공·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8

- 1.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동아리방 사용에 있어서 불건전한 행동. 화기사용 등을 하였을 경우
- 3. 행사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없는 경우
- 제8조(동아리지도교수) ① 동아리 지도교수는 해당 학과(계열)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산학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22.11.24.>
 - ②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행사활동 및 진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활동비 지급) ① 동아리 활동비 지급은 매 학기 등록 동아리에 한해 10만원 일괄 지급 한다.
 - ② 2학기에는 동아리 활동 사항을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총장을 승인을 받아 우수동아리를 선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0조(활동비운영) 전공동아리에 배정된 활동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 2. 동아리 특강
- 3. 동아리 세미나 개최
- 4. 경진대회 참가 지원
- 5.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동아리관련 활동
- 제11조(여비지급) 각종 경진대회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 참가 학생 1인당 여비

가. 식 대 1일 : 15,000원(1식 5,000원)

나. 숙박비 1박 : 20,000원

다. 교 통 비:실비

라. 참 가 비:실비

- 단, 전공동아리의 여비지원은 부산시내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시외지역의 경우만 지원한다.
- 제12조(여비의 조정)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운영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공・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8

부 칙

제1조(시행일)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산학처』에서 『교학처』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7.03.)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교학처』에서 『산학취업처』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산학취업처』를 『학생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학생산학취업처』를『산학처』로,『기획처』를『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전공ㆍ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4/8

[별지 제1호 서식]<표 개정 2019.07.16.>

동 아 리 등 록 원

동아리명						동아리 구분	 전 ⁻	공 / 창업 /	취업
【 활동목적 및	및 활동범의	위]			•		•		
동아리대표자		ير ت	가 (계열)	학년	반 성도	ti :	(학번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지도교수				과(계	열)	성	명 :		
회 원 수	총원 :		명(남	:		1:	명)		
동아리 운	영 규정	제6조에	의거		학년도	학기	동아리	등록원을	

동아리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학년도 학기 동아리 등록원을 제출합니다.

20 . . .

동아리대표자 : (인)

부산경상대학교총장 귀중



전공 · 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5/8

[별지 제2호 서식]

지도교수동의서

본인은 아래 동아리 지도교수에 동의하며,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아리 운영규정 제5장에 명시된 지도교수의 권한 및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아리명	
동아리대표자	

20 . . .

지도교수: (인)

부산경상대학교총장 귀중



전공·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6/8

[별지 제3호 서식]

동아리 활동사업 및 예산계획서

동아리명	

활동시기 (년월일)	활동사업 및 예산계획	세부 예산내역	소요금액	비고

20 학년도 학기 동아리 활동 및 사업 예산계획서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전공ㆍ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7/8

[별지 제4호 서식]

회 원 명 단

동아리명	

연 번	학과/계열	학년 (반)	학 번	성 별	성 명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빈		(반)		별		(사박)	(휴대군)	
	· ə ə ə ə	_				1 7		

◎ 휴학· 자퇴· 제적자는 동아리회원 자격을 가질수 없습니다.



전공ㆍ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2-1-28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8/8

[별지 제5호 서식]

직전학기 동아리활동 보고서

동아리명	
	i

활동기간 (년월일)	활동기관	활 동 내 용	참 여 인원수	소요금액	비고

※ 활동사항은 관련 실적(사진, 자격증 사본, 수상 증명서 등)물 첨부바람